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1

# 윤 리 규 정

**SK엠앤서비스 주식회사**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17 - 3


## 윤리규정 서문

SK엠앤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구성원, 고객, 주주, 사업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SUPEX Company를 지향한다.


회사가 추구하는 행복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사와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관계와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실천한다.

또한, 회사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등 상도이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이에 회사는 경영기본이념의 추구가치 및 경영원칙인 인간위주의 경영을 통한 SUPEX추구에 의거하여 구성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4

- 회사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여야 한다.
  
-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은 회사의 발전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
  
- 회사는 Business Partner(사업파트너, 이하 'BP'라 함)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 회사는 경제 발전에의 기여와 함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적합한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5

## 윤리규정 본문

### 1. 구성원의 자세


#### 1.1 성실한 업무수행

- 1)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2 품위유지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 1)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성희롱,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1.3 공정한 업무수행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6

- 1)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구성원은 BP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규정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홍보, 행사기념품, 경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 4)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P 등과의 접촉 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4 이해상충의 해결

- 1) 구성원은 회사와 윤리규정지침에서 정한 이해상충행위를 하거나 이해상충 관계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업무진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1.5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7

- 1) 구성원은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구성원은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구성원은 PC, 인터넷, 전자메일, 전화/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구성원은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5) 구성원은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회사가 정한 보안관리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고객에 대한 책임

### 2.1 고객중심 경영

- 1) 회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8

2) 회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 2.2 고객정보 보호


- 1) 회사는 고객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며, 최적의 IT 보안 시스템 및 고객정보관리자 운영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2.3 고객가치 제고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수준 유지, 안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 등 고객가치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구성원에 대한 책임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9

### 3.1 인간위주의 경영


- 1) 회사는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
- 2)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두뇌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SUPEX 추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구성원의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 3.2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

- 1)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2) 회사는 구성원이 상호신뢰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동료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4. 주주에 대한 책임

### 4.1 기업가치 제고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10

회사는 끊임없이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기업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 4.2 주주권익 보호

- 1)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 2)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 법규, 사규에 따라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3)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 5. Business Partner와의 관계

#### 5.1 공정한 거래 및 상생경영

- 1) 회사는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2) 구성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또는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11

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사회에 대한 책임


### 6.1 건전한 문화 창달

- 1)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사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 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 6.2 인간의 존엄성 존중

- 1)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고객,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종교·성·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

### 6.3 친환경적인 경영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17 - 12

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 6.4 사회공헌 활동

회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6.5 정치적 중립성 유지

- 1)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회사는 대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7. 윤리규정의 적용

#### 7.1 적용 대상 및 준수의무

- 1) 본 윤리규정은 회사와 회사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구성원은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13

본 윤리규정의 준수·서약 의무가 있다.


- 2)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7.2 위반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 1) 본 윤리규정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2)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제보자 보호과 관련하여서는 익명성 보장 등 내부제보자 보호 관련 윤리실천 지침에 따른다.

## 7.3 윤리규정 실천지침 및 윤리행동준칙 운영


- 1)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본 윤리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규정 실천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2)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해당 사업부장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행동준칙'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14

## 8. 윤리상담 및 제보처리


### 8.1 윤리상담

- 1) 임직원은 윤리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조직의 직책자 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조직의 직책자는 소속 임직원의 질의에 대해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윤리경영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2)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상담 내용에 대하여 윤리규정과 회사의 윤리경영 기준 및 방침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한다. 관련부서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상담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방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회사의 방침을 정립한 후, 이에 따라 상담을 한다.
- 3) 윤리상담 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피상담자에게 회신하고, 정립된 윤리경영 방침은 필요에 따라 전사에 공지한다.
- 4) 윤리경영담당부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상담자의 신원 및 상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페 이 지	17 - 15

## 8.2 제보처리

- 1) 윤리규정과 제반사규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직책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을 보고 받은 조직의 직책자는 제보사항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즉시 이관한다.
- 2)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따라 제보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 3)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4) 비방, 허위 제보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제보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5) 제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윤리경영담당임원의 검토를 통해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 6)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다.
- 7)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제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당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 8) 조치결과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17 - 16


### 8.3 자료 및 보안 관리

- 1) 상담·제보 관련 모든 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며, 우편, 팩스문서 등의 종이문서는 시건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 2) 상담·제보 관련 모든 자료는 허가된 자만 열람하여야 한다.
- 3) 제보 관련 자료는 영구 보관하며, 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한다.
- 4) 윤리경영담당임원은 윤리상담 및 제보에 대한 제반 보안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상담·제보와 관련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윤리경영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관리한다.

### 8.4 제보자 보호방침

- 1)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임직원이나 소속 부서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시정과 부서의 동 등 보호조치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제보자로부터 시정/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제보자의



	<b>윤리경영</b>	제 정 일 자	2009.09.30
		개 정 일 자	2019.07.01
	<b>윤리규정</b>	개 정 번 호	4
		폐 이 지	17 - 17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유관부서에 권고한다.

-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 3) 제보자 외에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 4) 비방, 허위 제보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 8.5 제재 및 감면

- 1) '8.4 제보자 보호방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인지한 제보자 신원이나 제보내용의 누설 및 암시
  -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 2) 윤리규정 또는 제반사규에 저촉되는 활동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